

강원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1회 정례회(6.1.~6.16.)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1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7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1. 06. 16.)
기획행정 위원회 (3)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훈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석훈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2)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	원안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1)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	수정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1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6. 16.(수)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1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장학생의 자격, 정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으로 한다. ②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 학점 이상인 경우에 우등생장학생이,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의 경우에 유공자장학생이 될 수 있다. ③ 새마을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윤석훈 의원



김진석 의원



김경식 의원

■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하고자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소방활동 유공으로 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대원과 그 대학생 자녀로 한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소속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 중에서 장학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며,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윤석훈 의원



김경식 의원



박윤미 의원



조성호 의원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1),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윤석훈 의원



정수진 의원



한창수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바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중에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김경식 의원



정수진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4)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창2),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3),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국민의힘·바례),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철원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가정위탁보호자로부터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하 “퇴소청소년등”이라 한다)은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소청소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소청소년등의 자립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퇴소청소년등의 자립능력 및 생활수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퇴소청소년등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및 자산형성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의 행사 지원,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및 후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김병석 의원



김진석 의원



김수철 의원



원태경 의원



정수진 의원



최종희 의원



한금석 의원

■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위호진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창2),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종자 분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분양과정의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란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의 시험 연구 및 종자생산·방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위호진 의원



김진석 의원



박윤미 의원



신명순 의원



윤지영 의원



정수진 의원

▣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율을 감소시켜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안전·건강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산업 등의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에게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윤석훈 의원



김경식 의원



윤지영 의원